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6
----------	-----

2024. 9.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8. 18. 김진경 의원 등 14명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김진경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였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강남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회의 운영원칙과 의정활동원칙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의원의 등록 및 선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 라. 의장과 부의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의 기관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6조)
- 마.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부터 제22조)
- 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안 제24조)
- 사. 의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안 2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가. 제정 취지

- 본 안건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에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조례 및 회의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기본조례로 일원화하며, 의회 선거 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미비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 임.

나. 검토내용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서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치법규인 조례가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사례>1)와 같이 개별조례와는 다른 ‘○○기

본조례'가 정책테마별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기본조례의 제정 구상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독자성을 살리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본조례의 제정 실태를 살펴보면 현행 입법형식상 기본조례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조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고 기본조례의 취지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폐제의 준거로도 삼고 있지도 않으며, 관련 조례 상호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각종 기본조례의 제정시에 체계 정당성이나 기본조례로써 실효성 측면에서 개별조례와의 차별성을 담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속히 제정되고 있는 각종 기본조례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개별조례와의 관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규정하거나, 개별조례의 제정·개정 시 고려되는 지향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입법형식만 기본조례이거나 기본조례가 개별조례에서 규율할 사항인 구체적인 실체적 내용까지 규율하는 등 개별조례와 기본조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득이하게 자치기본조례에서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규율 내용의 정당성 및 법

1)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적합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자치기본조례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조례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례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한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되고 기본조례도 위임기본조례와 자치기본조례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위임기본조례는 <사례>²⁾와 같이 상위법령의 제명이 기본법으로 되어있는 경우 위임받은 조례도 기본조례라는 제명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사례>³⁾와 같이 모법인 기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결정됨으로 위임기본조례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자치기본조례는 <예시>⁴⁾와 같이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자치단체에서

2) <사례> 위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례> 자치기본조례

고유사무에 대해 법령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 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제명을 ‘○○기본조례’ 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등을 <예시>⁵⁾와 같이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제명이 기본조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하여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위임조례의 성격도 있는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6장 26조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의회운영원칙, 의정활동원칙,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 회기운영, 의회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는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위임사무의 성격이 같은 자치사무로써 불가피하게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방식

- 1)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 2) 그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 3)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 4) 다른 조례의 제·개정 시 그 조례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

나의 조례안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조례가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임사항과 자치사무 구분에 따른 혼선의 정도, 입법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 조례안에서는 규율하고자 하는 위임사항이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 아닌 **같은 자치사무이고 각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혼선의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짐. 한편, 이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 조례안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이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각 의회에서는 독자적인 기본조례를 제정해 오고 있는 바 특히, 서울특별시의회가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시발점으로 종로구의회 등 서울시 자치구의회 11곳에서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위임조례의 근거 규정과 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기본이념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조례의 성격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3조(의회운영원칙)**에서는 기본 조례의 성격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의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입.

- 안 제4조(의정활동원칙)에서는 의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구민에 대한 정보공개)에서는 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⁶⁾제2조에 따른 자치단체에 해당하여 포괄적인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 안 제6조(등록)부터 안 제8조(선서)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⁷⁾제2조(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5조(선서)의 규정은 회의규칙과는 관련이 없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의 자구 및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수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9조(의장의 직무)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8조⁸⁾를 재기재한 것이고 제2항은 신설되는 규정으로 의장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을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의석을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8)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안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7조제3항⁹⁾을 재기재한 것이고 제1항 단서조항은 회의규칙 제7조제2항¹⁰⁾의 규정과 달리 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만료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즉 의장 선거가 있는 해의 6. 30. 까지만 임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의장단의 임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예시>¹¹⁾와 같이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공평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파행되는 경우 의장이 없는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2항의 규정은 회의규칙 제7조제1항¹²⁾을 재기재한 것임. 제3항은 회의규칙 제7조제2항¹³⁾과 달리 「국회법」 제15조제2항¹⁴⁾과 같이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재 전반기 의장단

9)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② 의원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11) <예시> 부칙

(의장단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0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② 의원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14)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의 임기는 2022. 7. 11.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2년이 되는 2024. 7. 10.이 임기만료일이 되고 5일 전인 2024. 7. 4.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임. 다만, 현 의장 임기 중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임시의장이 아닌 현 의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이 규정대로 확정되면 제10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선거는 제1항에 따라 2028. 6. 30. 전반기 의장단 임기종료가 되고 5일 전인 2028. 6. 25. 이전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6. 30. 이전까지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의회는 의장없는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안 제11조(의장·부의장의 선거)의 규정은 현재 의장의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제에서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일명 **교황선출방식**(콘클라베: conclave)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후보등록제는 복수의 의원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황선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1인만 의장후보로 등록한 경우 모두가 후보인 교황선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투표운영방식이 기권과 반대를 구별할 수 없는 투표방법으로 진행되어 의결권 행사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는 바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참고로 「공직선거법」 15)제187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인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15)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같은 법 제188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 따른 지방의원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16)제73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바 이와 같이 선거제도는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그 당선기준을 달리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제에서 교황선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법 의도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제2항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제3항은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주민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은 다선의원을 존중하

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6)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려는 의도로 보여짐.

- 안 제12조(정견 발표)에서는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게만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한 것을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까지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를 성명 가나다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회의규칙¹⁷⁾은 추천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63조¹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선,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는 바 어느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13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의 규정은 회의규칙 제9조¹⁹⁾의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특히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안건의 접수·상정 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및 제15조(의장·부의장의 사임)의 규정은 회의규칙 제8조²⁰⁾ 및 제10조²¹⁾의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재기재한 것임.

1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3(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천으로 정한다.

18)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장, 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안 제16조(사무국)는 기본 조례의 성격에 맞게 안내적 차원에서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7조(연간 회의일수)부터 제21조(심의)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2)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일부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여 재기재한 것임. 다만, 제18조의 신설규정 중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의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22조(개회식)는 회의규칙 제4조²³⁾를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재기재한 것으로 임시회의 경우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3조(교섭단체의 구성)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²⁴⁾가

2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회의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24)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신설되어 2023. 9. 22. 시행되는 바 실제적인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율하고 기본 조례의 성격에 맞게 안내적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4조(위원회의 설치)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²⁵⁾의 규정을 기본 조례에 재기재한 것임.
- 안 제25조(의원연구단체) 및 제26조(입법·법률고문)에서는 기존에 별도의 조례가 있으나 기본 조례의 성격에 맞게 안내적 차원에서 기존의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재기재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제명의 낫표(「」)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제명 중 “운용조례”를 “운영 조례”로 오기된 자구를 바로잡으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입법형식 상 <예시>²⁶⁾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5)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6)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

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에서는 종전의 조례 폐지, 회의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행위를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려는 것임.

다. 종합의견

- 개별조례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본조례”라는 제명이 양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나 우리 의회에는 “기본조례”라는 제명을 가진 조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의회의 상징성을 갖는 최초의 기본조례로 보여져 의미는 있다고 보여짐. 다만, 의장 선거의 방식 및 임기, 정견 발표 순서, 부의장의 직무대리 등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206호

제안일자: 2024. 9. 3.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의장의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 부칙 규정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의장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및 별지 서식)

나. 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다. 정견 발표를 의장 후보자만 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정견발표 순서를 후보자 게재순위로 함(안 제12조의3)

라. 그 밖에 부칙 규정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4항 중 “부의장은”을 “부의장의 선거는”으로, “선거한다”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 제1항 중 “의장·부의장”을 “의장”으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를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하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의2(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정견 발표) ①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앞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개정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정견 발표) ① 의장 --

 -----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
 -----.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6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의2(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정견 발표) ① 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앞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제12조의2제

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이때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그 접수·상정 및 본회의 개의와 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17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2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2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에 위원회를 두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의원연구활동 등

제25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 및 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른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